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65 발의연월일: 2020. 10. 19.

발 의 자: 김철민ㆍ이원욱ㆍ윤관석

박 정・도종환・이정문

윤후덕 · 강득구 · 조응천

허 영·송석준·심상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최근 지진, 폭우,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, 기능·구조·미의기본 건축요소의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, 범죄예방,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arrier Free)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,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.

주요내용

가.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 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업무환경에서 체계적인 건축

- 사 업무관리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질 높은 전문교육과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(안 제23조제1항).
- 나.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시대에 맞게 보완하여 건축사업무 개선 에 기여하려 함(안 제31조제1항).
- 다.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토록 하여 건축사의 윤리 확립 및 관리강화를 위한 실효 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31조의3 신설 및 제38조의11제2항).
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"시·도지사에게"를 "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시·도지사에게"로 한다.

제30조의3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제31조의3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

제31조제1항 중 "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"를 "건축문화의 발전과 건축물의 안전 및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"로 한다.

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3(윤리규정)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 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.

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8조의11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제30조에 따른 보고·조사 등(제8호에 관련된 업무에 한정한다)
- 8. 제30조의3의 징계(같은 조 제1항제9호 위반에 따른 제2항제2호의

징계 중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한정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중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②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,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)	제23조(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)
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	①
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	
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<u>시·도지사에게</u> 건축사사	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
무소의 개설신고(이하 "건축사	회에 가입한 후 시·도지사에게
사무소개설신고"라 한다)를 하	
여야 한다.	
② ~ ⑩ (생 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
제30조의3(징계) ①국토교통부장	제30조의3(징계) ①
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	
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	
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	
다. 다만, 제1호나 제9호에 해	
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	
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	
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. 제31조의3에 따른 윤리규정
	을 위반한 경우
<u>9.</u> (생 략)	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건축사협회) ① 건축사는 저건축사의 품위 유지, 업무 개선, 건축기술의 연구·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 <신 설>

제38조의11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저 ① (생 략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~ 6. (생 략) <신 설>

제31조(건축사협회) ①
건축문화의 발전과
건축물의 안전 및 공공의 복리
를 증진하기 위하여
<u>.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1조의3(윤리규정) ① 건축사협
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
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
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
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.
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
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
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38조의11(권한의 위임 및 위탁)
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제30조에 따른 보고·조사 등
(제8호에 관련된 업무에 한정

	<u>한다)</u>
<u><신 설></u>	8. 제30조의3의 징계(같은 조
	제1항제9호 위반에 따른 제2
	항제2호의 징계 중 1년 이하
	의 업무정지에 한정한다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